

제53화

투자성상품 대상 청약철회권

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(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내에서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.

- 가. (금소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)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나. (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) 계약 체결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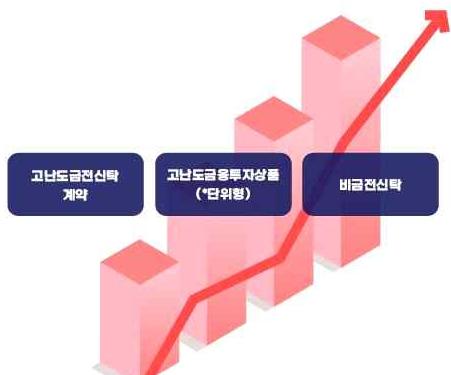
주의사항

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
투자가 예탁한 금전 등(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)을
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.

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,
청약의 철회는 투자가 서면 등을 발송*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.
투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.
* 서면, 전자우편, 후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

서면등을 발송*한 때
효력이 발생

투자성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



* 단위형: 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 소비자가 지급한 금전 등으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

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**3영업일 이내에**
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,
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
정해진 **연체이자율**을 금전·재화·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
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

생활금융특집